



## 최태원-노소영 소송의 핵심, ‘특유재산’이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주식 650만주(시가 1조 3700억원)의 42.29%(650만주)를 재산분할로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선친 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아 출발된 특유재산이어서 원칙적

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입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으로 거론되는 재산들은 부동산 등 가액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유재산 해당 여부는 늘 다툼의 대상입니다. ‘재산 감소 방지’ ‘증식에 협력’과 같은 모호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해당해야 특유재산이라도 예외적으

로 나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1998년 한 이혼사건에서 남편이 결혼 전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직장에서 퇴직하자 아내가 보석학원에 다닌 경험을 살려 함께 금은방을 운영했고, 이후에는 도배공으로 일하면서 그 수입을 생활비로 쓰는 등으로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1993년 판결에서도 어머니가 준 돈으로 매수한 단독주택을 분할 대상 특유재산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가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수리업을 하는 남편과 가계를 꾸려 왔고, 자동차수리점의 영업이 부진하자 단독주택을 헐고 2층 건물을 신축해 식당을 열었으며, 남편의 보증채무로 2층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아내가 대신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 ◇ 가사노동 포함 여부에 따라 분할 재산규모 달라져

이처럼 아내가 직접 나서 돈을 번 경우 뿐 아니라 가사노동만을 한 경우에도 재산의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의 분할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하급심에서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특유재산이라도 대부분 분할대상 재산에는 포함시키면서 기여도를 참작해 분할비율을 정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이 같은 실무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단순가사노동만 한 경우에도 특

유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인정하면 사실상 모든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이 경우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재산분할의 본질에도 반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사노동 또한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에는 해당하는 만큼 일단 분할대상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맞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주식은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식은 경영권 수단이어서 가사공동체와 구분이 되고, 노 관장은 가사노동이나 아트센터 관장 등을 영위했으며 경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혼인기간에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가치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 등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결국 특유재산의 예외적인 분할 인정 사유가 되는 ‘감소 방지’ ‘증식 협력’의 해석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좁게 해석하면 1심 판결이 유지되고, 가사노동을 포함해 넓게 해석할 경우 변경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됐든 재산규모와 사회적 과장을 고려할 때 ‘세기의 소송’이 될 듯 합니다.

(출처/조선일보)